

아름다운 여수, 행복한 시민



제 219 호
2016년12월8일(목)

여수시보

시정방침

- 1. 함께하는 소통시정
- 1. 활력있는 지역경제
- 1. 수준높은 교육복지
- 1. 앞서가는 해양관광
- 1. 걱정없는 안전사회

■ 발행인 : 여수시장 ■ 발행소 : 공보담당관실 / 여수시 시청로 1(학동) ☎ 659-3023 FAX) 659-5803

목 차

【고 시】

- 여수시 고시 제2016-316호 여수 도시관리계획(학교)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/3

【공 고】

- 여수시 공고 제2016-2104호 여수도시계획시설(도로)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사전열람공고 /5
- 여수시 공고 제2016-2166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한 청문 공시송달 공고 /7
- 여수시 공고 제2016-2174호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통보 공시송달공고 /8
- 여수시 공고 제2016-2175호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촉구 공시송달공고 /9
- 여수시 공고 제2016-2176호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재산 압류 공시송달공고 /10
- 여수시 공고 제2016-2177호 여수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위원 후보자 모집 공고 /11

회 람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

여수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

여수 도시관리계획(학교)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

여수 도시관리계획(학교)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 30조, 제32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,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「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」 제2조 규정에 따라 고시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
2016. 11. .

여 수 시 장

1. 여수 도시관리계획(학교) 결정 변경 조서 : 다음
2. 여수 도시관리계획(학교) 결정 변경 지형도면 : 게재 생략
3. 관계 도서는 여수시청 도시계획과(061-659-4013)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
여수 도시관리계획(학교) 결정(변경) 조서

1. 도시계획시설(학교) 결정(변경) 조서

가. 공공·문화체육시설

■ 학교 결정(변경)조서

구분	도면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 세분	위 치	면 적(m ²)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변경	56	학교	여천초교	주삼동 793 일원	25,363	증)124	25,487	여고-30호 86.12.3.	

■ 학교변경 사유서

도면표시 번호	시설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56	학 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면적변경 - 기정 : 25,363m² - 변경 : 25,487m² 증 203m², 감 79m², 1.1%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학교시설 운영에 불필요한 토지를 제척하고 학교운영 계획상 향후 편입이 예상되는 토지를 추가하여 학교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함

여수도시계획시설(도로)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사전열람공고

여수도시계획시설(도로)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 건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 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고 중에 있으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6. 12.

여 수 시 장

1. 사업시행지 위치: 여수시 문수동 640-5번지 일원

2. 사업종류 및 명칭

가. 종 류: 여수도시계획시설(도로)사업

나. 명 칭: 문수동 OO아파트 주변도로개설공사

3.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

가. 면 적: 1,800.5㎡

나. 규 모: L= 130m, B= 12m

4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
가. 성 명: 다산에스씨(주) 대표 김정민

나. 주 소: 광주광역시 서구 상일로 24번길 17-1

5. 사업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

가. 착수예정년월일: 2016. 12.(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)

나. 준공예정년월일: 2017. 12. 31.

6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·지번·지목 및 면적,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·권리자의 성명·주소: 붙임

7. 공람기간: 2016. 12. . ~ 2016. 12. .(14일간)

8. 공람장소: 여수시 도시계획과

9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도시계획과(☎061-659-4013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·지번·지목 및 면적, 소유권과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·권리자의 성명·주소

○ 토지조서

번호	토지소재지		지목	지 적(m ²)		소유자		이해관계인			비고
	동	번 지		총	편 입	주 소	성 명	권리의 종류	성 명	주 소	
소계											
1	문수동	640-5	학	1,772.1	1,770.6	공	전라남도교육감				
2	문수동	182-5	학	19.4	19.4	전남 여수시 문수동 182	학교법인학당학원				
3	문수동	182-6	학	9.0	9.0	전남 여수시 문수동 182	학교법인학당학원				

○ 지장물조서

번호	토 지 소 재 지			구 분				소 유 자		비고
	동	지번	지목	층별	용도	구조	면적(m ²)	주 소	성 명	
1	문수동	640-5	학	1층	창고	벽돌조/ 슬라브	33.75	공	전라남도교육감	
				1층	창고	벽돌조/ 슬라브	33.75			
				2층	문서고	벽돌조/ 슬라브	33.75			
				2층	창고	벽돌조/ 슬라브	33.75			

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한 청문 공시송달

식품위생법 제36조(시설기준) 제1항 및 같은 법 제37조(영업허가 등)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(허가취소 등) 제3항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(영업소폐쇄)에 앞서 같은 법 제81조(청문)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청문을 실시코자 청문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, 등기우편물이 우편물 반송으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16. 12. 07.

여 수 시 장

1. 공고기간 : 2016. 12. 08. ~ 2016. 12. 23일까지
2. 공고장소 : 시 보, 시 홈페이지, 읍·면·동 게시판
3. 송달하고자 하는 내용(청문)

업종	업소명	업주명	소재지	위반사항	청문 지정일시 등			처분근거
					청문일시	청문주재자	청문장소	
일반 음식점	말숙이 선어 (제28-1171호)	김말숙	여수시 학동서3길 36-1 (학동)	영업장 시설물 전부철거	2017.1.3. 14:00	법률지원팀장 박활수	여수시 무료법률 상담실	식품위생법 제36조, 제37조, 제75조

4. 예정 행정처분 : 영업소폐쇄
5. 고지사항

청문일시에 청문에 참석하지 않거나, 별도의 의견이 없을 경우에는 위반사항에 대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식품위생법 제75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(영업소폐쇄) 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. 끝.

□ 본 처분에 대한 문의 : 여수시 보건행정과 공중위생팀 김승호 ☎(061) 659-4229)

공 시 송 달 공 고

「건축법」 제80조(이행강제금)에 따라 위반 건축물 소유자에게 『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통보』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, 우편물이 반송(폐문부재, 수취인불명, 수취인거절등)되어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(공고) 합니다.

2016. 12. 8.

여 수 시 장

1. 처분제목 :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통보
2. 법적근거 : 「건축법」 제80조(이행강제금)
3. 공고대상자(송달내용)

연번	건축주 (행위자)	처분원인 (위반내용)	처분내용	반송주소	반송사유
1	이인균	위반건축물	이행강제금 부과통보	여수시 무선2길 39, 2**동 1**호 (화장동, 무선 주공아파트)	폐문부재
2	문선심	위반건축물	이행강제금 부과통보	인천광역시 서구 청라한울로 17, 3**동 18**호 (경서동, 청라 한라비발디)	폐문부재

4. 공고기간 : 2016. 12. 8. ~ 2016. 12. 22.(15일간)
5. 공고방법 :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시판 및 지정게시판
6. 기타사항

-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통보하오니 납부기한 내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
바라며, 이행강제금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「행정심판법」 제27조에 따라 행
정심판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※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여수시 허가민원과(☎061-659-4119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끝.

공 시 송 달 공 고

「건축법」 제79조(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)에 따라 위반 건축물 소유자에게 『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촉구』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, 우편물이 반송(폐문부재, 수취인불명, 수취인거절등)되어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(공고) 합니다.

2016. 12. 8.

여 수 시 장

- 1. 처분제목 :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촉구
- 2. 법적근거 : 「건축법」 제79조(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)
- 3. 공고대상자(송달내용)

연번	건축주 (행위자)	처분원인 (위반내용)	처분내용	반송주소	반송사유
1	이유진	위반건축물	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촉구	여수시 무선로 50, 1**동 20*호 (학동, 신동아파밀리에아파트)	폐문부재

- 4. 공고기간 : 2016. 12. 8. ~ 2016. 12. 22.(15일간)
- 5. 공고방법 :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시판 및 지정게시판
- 6. 기타사항

-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촉구 하며 시정명령 기일까지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「건축법」 제80조(이행강제금)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.

※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여수시 허가민원과(☎061-659-4119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끝.

공 시 송 달 공 고

「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제9조(압류의 요건등)에 따라 이행강제금 체납자에게 부동산 등 압류에 따른 『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재산 압류 통보』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, 우편물이 반송(폐문 부재, 수취인 부재 및 불명, 주소 및 이사불명, 수취거절 등)되어 행정절차법 제 14조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.

2016. 12. 8.

여 수 시 장

1. 처분제목 :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재산 압류
2. 법적근거 : 「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제9조(압류의 요건등)
3. 공고대상자(송달내용)

건축주 (행위자)	처분원인 (위반내용)	처분내용	반송주소	반송사유
윤재곤	이행강제금 체납	재산 압류통보	여수시 고소4길 34-1(고소동)	수취인불명

4. 공고기간 : 2016. 12. 8. ~ 2016. 12. 22.(15일간)
5. 공고방법 : 여수시청 게시판 및 전국 시군구 게시판, 인터넷홈페이지
6. 기타사항

※ 「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제9조(압류의 요건등)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였음을 알려드리며, 체납된 이행강제금이 납부 될 경우 「지방세기본법」 제92조에 따라 압류 해제함을 알려 드립니다.

※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여수시 허가민원과(☎061-659-4119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끝.

공 고

「여수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」 제3조에 의한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모집인원 및 자격요건 등을 미리 알려 위원회에 참여할 위원 후보자를 모집하고자 「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」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6년 12 월 8 일

여 수 시 장

여수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위원 후보자 모집 공고

1. 모집기간: 2016.12.8. ~ 2016.12.22.(15일간)
2. 모집인원: 13명
3. 위원역할: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
 - 지형여건 등 주변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검토
 -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검토
 -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검토
 -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고시하는 중점검토 항목
4. 자격요건
 -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5. 위원임기: 2017. 1. 1. ~ 2018.12.31.(2년간, 연임 가능)
6. 선정방법 : 서면심사 후 적격자 위촉
7. 선정기준
 -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수 재직자(부교수 포함)
 -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

-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및 건설용역업에 종사하는 자,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업에 종사하는 자 등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- 동일한 조건일 경우 여성 우선
- 우리시 각종 위원회 참여 경력이 있는 자 우선

8. 제출서류

- 여수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지원신청서(자격증명서류 포함) 및 자필 이력서 각 1부

9. 접수방법: 직접방문, 우편, 팩스(061-659-5834), 전자우편(jyg1631720@korea.kr)

10. 접수장소: 여수시 건설방재과(방재팀, 061-659-4043)

11. 대상자 선정 통보: 2016.12월중(개별통보)

12. 기타 참고사항

-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.
- 위원회 참석(소집회의) 또는 서면검토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검토수당을 지급합니다.
- 참여를 희망하는 자 중 위원회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건설방재과(061-659-4043)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 끝.